

#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 2022학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10인	2인
재적임원	10인	2인
참석임원	10인	1인

**1. 일 시** : 2022.4.27.(수) 10:00 ~ 12:30 (회의소집통보일: 2022.4.19.)

**2. 장 소** : 서울 POSCO센터 서관 19층 회의실

### 3. 임원 출·결 사항

가. 참석 임원

- 이사(10인) : 이사장 최정우, 이사 이영선, 이사 정민근, 이사 허엽, 이사 이우일, 이사 장지상, 이사 김진한, 이사 김무환, 이사 이덕락, 이사 송정현
- 감사(1인) : 감사 장태현

나. 결석 임원(1인) : 감사 윤태화

### 4. 안건


가. 의결안건

- ① 2021 회계 연도 재무제표 승인안
- ② 정관 변경안
- ③ 융합생명공학부 폐지안
- ④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명교원 정년연장안

나. 보고안건

- ① 대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② 전임교원 임용결과 보고

이사 김무환  이사 이덕락 

감사 장태현 

## 5. 개회선언

당 법인 정관 제29조의 소정 절차에 의거한 2022.4.19. 소집통보에 따라 최정우 이사장은 금일 10:00의 이사회가 정관 제27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 6. 회의내용

### 가. 의결안건

#### ① 2021 회계 연도 재무제표 승인안

이사장은 2021 회계 연도 재무제표 승인안을 발의한 후 장태현 감사에게 감사의견을 요청하다.

장태현 감사는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2021 회계 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의 감사결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말하다.

감사보고 후 선주현 법인 본부장으로부터 2021 회계 연도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보고받다.

이사 김무환 김 무환 이사 이덕락 이덕락

감사 장태현 장태현

이영선 이사는 연구간접비 수입이 증가되었는데, 연구간접비를 활용하여 교육 및 대학운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다.

정민근 이사, 허엽 이사, 이우일 이사, 장지상 이사는 향후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지식재산권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를 하다.

이상 논의 후 정민근 이사의 동의, 이우일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21 회계 연도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및 법인 정관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에 의거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의 2021 회계 연도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1. 자금계산서

(억원)

수입				지출			
구분	법인	대학	가속기	구분	법인	대학	가속기
당기 수입	1,458	1,767	789	당기 지출	1,110	1,723	652
전기이월자금	355	439	169	차기이월자금	703	483	306
합계	1,813	2,206	958	합계	1,813	2,206	958

이사 김무환 김 무환 이사 이덕락 이덕락 감사 장태현 장태현

## 2. 대차대조표

(억원)

구분	법인	대학	가속기
자산	12,451	5,293	1,206
부채	4	306	12
기본금	12,447	4,987	1,194

※ 산학협력단은 독립법인으로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의결함으로 의결주문에서 제외

### ② 정관 변경안

이사장은 정관 변경안을 발의하고 선주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이영선 이사는 정관 변경안이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다.

이후 이영선 이사의 동의, 김진한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안을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 【의결 내용】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이사 김무환 김 무환 이사 이덕락 이덕락 감사 장태현 장태현

1. 정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p>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 ③ (생략)            ④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회사인 주식회사 <u>포스코</u> 대표이사(1인) 및 대학 총장을 이사로 한다.</p>	<p>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회사인 주식회사 <u>포스코홀딩스</u> 대표이사(1인) 및 대학 총장을 이사로 한다.</p>
<p>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u>5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u>3년</u>이 경과한 자</p>	<p>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⑥ (현행과 동일)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u>10년</u>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u>6년</u>이 경과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u></p> <p>&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제 4 관 징계</u></p> <p><u>제6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u>  <u>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u>            1. <u>교육 관계 법령 및 본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u>            2. <u>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u>            3. <u>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u></p>

이사 김무환  이사 이덕락 

감사 장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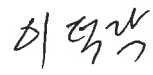

현행	변경
	<p>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p> <p>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p> <p>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p> <p>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p>
<p>제6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 ② (생략)</p>	<p>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 ② (현행과 동일)</p>
<p>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 ④ (생략)</p>	<p>제66조의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 ④ (현행과 동일)</p>
<p>제6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7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5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이사 김무환 김무환

이사 이덕락 이덕락

감사 장태현 장태현

현행	변경
<p>제72조 (징계의결) &lt;신설&gt;</p> <p>① (생략)</p> <p>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u>심리하고</u>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u>사유를 기록한</u>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u>통고하여야</u> 한다.</p> <p>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u>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u>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u>교원에게 교부하여야</u> 한다. &lt;신설&gt;</p> <p>⑤ (생략)</p>	<p>제72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정기준 등에 따라 <u>징계의결을 하여야</u>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u>심의한 결과</u>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u>이유를 적은</u>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u>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u> 한다.</p> <p>④ 임용권자가 제3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u>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u>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u>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u> 한다. (삭제)</p> <p>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u>함께 통보하여야</u> 한다.</p> <p>⑥ (현행과 동일)</p>


이사 김무환  이사 이덕락  감사 장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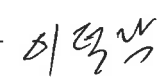
현행	변경
<p>제72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제72조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72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제72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3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u>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u></p>	<p>제73조 (삭제)</p>
<p><u>제 3 절 사 무 직 원</u></p> <p>제77조 (자격) ① ~ ② (생략)            ③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을 준용한다.</p>	<p><u>제 2 절 사 무 직 원</u></p> <p>제77조 (자격) ① ~ ② (생략)            ③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4를 준용한다.</p>
<p><u>부 칙</u></p> <p><u>&lt;신 설&gt;</u></p>	<p><u>부 칙</u></p> <p><u>이 정관은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u></p>


2. 시행일: 2022.4.27.부

③ **융합생명공학부 폐지안**

- 이사장은 융합생명공학부 폐지안을 발의하고 정규열 교무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이사 김무환 

이사 이덕락 

감사 장태현 



이영선 이사는 향후 융합생명 분야의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다.

정규열 처장은 재작년에 융합대학원을 출범해서 다양한 종류의 융합프로그램을 대학원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융합생명 분야도 융합대학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답변하다.

이후 허염 이사의 동의, 장지상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융합생명공학부 폐지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 【의결 내용】

융합생명공학부 폐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 의결함.

○ 내용 : 융합생명공학부 폐지

○ 시행일 : 2022년 4월 27일부 (이사회 승인일)

#### ④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명교원 정년연장안**

○ 이사장은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명교원 정년연장안을 발의하고 정규열 교무처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송정현 이사는 POSTECH University Professor로 임명된 최영주 교수는 지난 주에 과학기술훈장을 수여받으셨으며, 우리나라 수학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받으실 업적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사 김무환 김무환 이사 이덕락 이덕락

감사 장태현 장태현

이후 이우일 이사의 동의, 송정현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명교원 정년연장안을 원안대로 아래의 의결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의결 내용】**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명교원에 대한 교원 정년연장 임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함.

추천학과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정년퇴직 예정일 (만65세)	정년연장안
수학과	최영주	교수	'59.6.15. (63세)	'24.8.31.	'29.8.31. 까지 (만 7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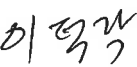

**나. 보고안건**

**① 대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김무환 총장은 대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하다.

김진한 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학교가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쌍방향 의사소통체계 구축과 함께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학교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였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면 될 것이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이사 김무환  이사 이덕락  감사 장태현 

의사소통 및 보고 체계는 쌍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안전의무사항에 대한 대학 측의 안내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피드백, 주요이슈에 대한 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도급용역위탁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위탁업체에 안전 관련 의무조치를 요청하고, 그 조치계획과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다.

이상 안전에 대한 논의 후 심의를 마치다.

## ② 전임교원 임용결과

정규열 교무처장은 전임교원 임용결과에 대해 보고하다. 특별한 의견없이 안전에 대한 심의를 마치다.

### 【대표 간서명】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대표 간서명을 위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최정우 이사장의 발의, 이영선 이사의 동의, 장지상 이사의 재청을 거쳐 만장일치로 김무환 이사, 이덕락 이사, 장태현 감사 3인을 선임 의결하다.

이사 김무환 김무환

이사 이덕락 이덕락

감사 장태현 장태현

## 7. 이사회 폐회

이상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 다음과 같이 기명, 서명하다.

2022년 4월 27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이 사 장	최 정 우	최 정 우
	이 사	이 영 선	이 영 선
	이 사	정 민 근	정 민 근
	이 사	허 염	허 염
	이 사	이 우 일	이 우 일
	이 사	장 지 상	장 지 상
	이 사	김 진 한	김 진 한
	이 사	김 무 환	김 무 환
	이 사	이 덕 락	이 덕 락
	이 사	송 정 현	송 정 현
	감 사	장 태 현	장 태 현